

청주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587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58774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단2407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얄

담당변호사 박병철, 이민형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4. 25.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단24076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제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G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 G에게는 적어도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원고는 망 G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망 G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망 G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거나 또는 피고가 망 G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내지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이종인, 판사 전보람